

청원요지서

접수번호	76		접수년월일	2004. 4. 29
청원인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신반포2지구(아) 101-507		
	성명	허명화의 4인	주민등록번호	
소개의원	한봉수 의원 (한나라당, 서초구 제3선거구, 보건사회위원회)			
건명	서울특별시재산 중 자치구 이관대상재산 조속이관에 관한 청원			
소관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요지

- 1988.5.1 서초구가 지방자치단체로 분구됨에 따라 관령법령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에서 서초구로 이관되어야 할 재산중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차례 이관요청 하였으나 미이관된 재산에 대하여 조속이관을 요구함.
- 지방재정법시행령 제102조의 규정에 의한 서초구 청사부지 무상양여요청과 지방자치법 제5조 및 서울시 시유재산 조정계획의 취지에 따른 공공용지시설 부지 및 200㎡미만 잡종재산, 도로폭 20m 미만도로, 시설완료된 근린공원 및 어린이공원 등 437필지, 동사무소 및 서초구민회관 등 공공시설점유 체비지 20필지 등을 검토후 자치구에 무상이관되어야 함에도 15년이 지난 현재까지 수차례에 걸쳐 이관요청 하였음에도 아무런 조치 없이 미이관된 실정임.
- 이에 청원인들은 서울시로부터 조속히 자치구에 이관하여야 할 재산은 이관토록 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합리적이고 즉각적인 조치가 강구되기를 바라는 내용의 청원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1. 제안자

- 서울특별시장

2. 제안이유

- 시상부문별 개별조례를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2003. 6. 16)로 통합하여 시행하는 과정에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여 시상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서울사랑시민상의 품격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시상부문에 여성부문을 신설하여 9개 부문으로 함(안 제2조제1항)

※ 현행 8개부문 : 봉사·문화·환경·복지·어린이 및 청소년·교통·건축·토목부문

나. 복지부문에 추가되는 장애극복자 분야는 장애인주간(4월 20일~4월 26일)에, 신설되는 여성부문은 여성주간(7월 1일~7월 7일)에 각각 시상하도록 함(안 제4조제1항).

다. 문화부문의 대상 1명을 삭제하여 본상을 13명에서 14명으로 하고, 복지부문에 복지자원봉사·후원자·종사자 분야 외에 장애극복자 분야를 추가하여 시상인원을 6명(대상 1명, 본상 2명, 장려상 3명) 증원하며, 신설되는 여성부문의 시상인원은 양성평등·사회참여·경제활동·보육·건강가정 등 5개 분야로 하고, 여성부문의 시상인원을 6명(대상 1명, 본상 2명, 장려상 3명)으로 함(안 별표 1)

라. 문화부문의 본상 시상금을 7,000천원에서 10,000천원으로 하고, 신설되는 여성부문의 시상금을 대상 10,000천원, 본상 5,000천원, 장려상 3,000천원으로 함(안 별표 2).

4. 검토요지

현행 서울사랑시민상은 봉사부문 등 8개 부문별로 뛰어난 공적이 있는 시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부문별 대상, 본상, 장려상이 있고 시민대상 총원은 223명, 시상금액은 6억 7천만원으로 되어 있으며, 본 개정안은 시상대상 총원 235명, 시상금액 8억 6천 1백만원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

가. 안 제2조 제1항 6호(시상부문 및 인원) 신설

- 서울의 발전과 밝고 건전한 시민사회의 기풍을 진작시키는데 기여한 공적이 있는 시민과 단체에 수여하는 서울사랑시민상에 대하여 봉사·문화·환경·복지 등 8가지 분야 부문 외에 여성부문을 신설하는 것은 양성평등주의 실현이나 여권을 신장하는데 의미가 있으며
- 시상인원은 문화부문의 대상 1명을 삭제하고 대신 본상에 1명을 증원하여 14명으로 조정하였고, 복지부문에는 다른 부문의 시상인원을 고려하여 대상 1명, 본상 2명, 장려상 3명으로 하여 총 6명으로 하였으며
- 신설되는 여성부문의 시상대상은 양성평등·사회참여·경제활동·보육·건강가정 등 5가지 세부분야 유공자에 대해 대상 1명, 본상 2명, 장려상 3명으로 조정하고자 함.

나. 안 제4조 제1항 4호(시상방법 및 시기) 개정

- 복지부문 시상방법과 시기를 복지자원봉사·후원자 및 종사자 분야(9월 7일)와 장애극복자 분야로 세분하여 장애인 시상은 장애인 주간(4월 20~4월 26일)에, 또한 여성부문 시상은 여성주간(7월 1일~7월 7일)에 실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보여지며,

다. 안 제9조(시상금 등) 별표의 개정

- 문화부문의 시상금 중 본상을 7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인상하여 대상금액과 같게 한 것은 문화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지라도 통합조례 제정 당시 수정의결안에 반하고 또한 시상금액을 종류별로 차등 구분한 의미가 없음.

※ 현행 부문별 시상금 내역

(단위:천원)

부 문 별	종 류 별			비 고
	대 상 (11명)	본 상 (57명)	장려상 (155명)	
봉사부문	12,000	7,000	5,000	
문화부문	10,000	7,000	-	
환경, 복지, 교통, 건축, 토목부문	10,000	5,000	3,000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서울사랑시민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중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여성부문

제4조제1항중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6호 내지 제8호를 제7호 내지 제9호로 하고, 동항에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복지부문

가. 복지자원봉사·후원자 및 종사자 분야 : 9월 7일

나. 장애극복자 분야 : 장애인주간(4월 20일~4월 26일)